

## 세부정책: 상품광고

### 제1조(목적)

본 정책은 쿠팡 주식회사 또는 그 계열사(서비스제공의 주체가 되는 법인을 의미하며, 이하 '회사'라 통칭한다)가 제공하는 상품광고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회사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이외에는 「쿠팡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의 정의된 바에 따른다.

1. 상품광고: 회사의 광고상품 중,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한 상품 및 상품에 설정한 검색키워드 또는 특정페이지를 고객이 쿠팡이츠 앱에서 탐색할 경우 그 이용자의 상품이 결과값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서비스
2. 검색키워드: 이용자가 검색키워드 광고로 이용자의 상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입찰하여 설정하는 입력값
3. 상품광고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광고 및 광고에 부수되는 제반 서비스

### 제3조 (정책의 게시와 개정)

- ① 회사는 정책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쿠팡이츠 또는 판매자 전용시스템 등에 게시한다.
-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본 정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정책과 변경정책 및 변경정책의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쿠팡이츠 또는 판매자 전용시스템 등에 공지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쿠팡이츠 또는 판매자 전용시스템 등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 ④ 이용자는 변경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정책에 따른 상품광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4조 (상품광고 서비스의 내용)

- ① 상품광고는 이용료 산정 방식 및 광고노출 방식 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이용료 산정 방식
    - 가. 고정가 방식: 회사가 별도로 정해 놓은 가격으로 이용자가 개별 광고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 나. 입찰제 방식: 회사가 별도로 정해 놓은 입찰 프로세스에 따라 개별 광고상품의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에 따라 이용자가 광고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 다. 정률가 방식: 회사가 별도로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료 산정 시 적용될 정률 퍼센트(%)를 정하여 개별 광고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 라. 기타: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개별 광고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광고노출 방식

가. 실시간노출 방식: 회사가 별도로 정해 놓은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

나. 고정노출 방식: 이용자의 광고가 일정기간 동안 결과값으로 노출되는 방식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기타의 방식

- ②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상품광고 이외에, 별도의 이용료 산정 방식, 광고노출 방식 등을 신규 개발 또는 조합하여 새로운 상품광고 유형을 생성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상품광고의 구성 요소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상품 및 검색키워드가 판매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④ 회사는 상품광고의 신청 절차 및 게재 영역, 기타 서비스 내용 등을 쿠팡이츠 또는 판매자 전용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한다.

**제5조(검색키워드에 대한 관리)**

- ① 상품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후이라도, 자동으로 생성된 검색키워드 또는 이용자가 설정한 검색키워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검색키워드를 즉시 제외할 수 있다.
  - 1. 통신판매의 성질에 비추어 당해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2.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검색키워드를 설정하여 고객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높은 검색키워드를 설정하여 고객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
  - 4. 행정기관 또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거나 소비자 단체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회사의 영업 또는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검색키워드가 제외된 경우, 이용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같음)으로 소명하고 해당 검색키워드의 재개를 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상품광고에 등록될 상품이나 설정될 검색키워드에 대해서는 회사의 광고상품 관련 정책, 기타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해 상품 및 검색 키워드에 대한 신청 과정에서 사전에 고지된다.

## 제6조 (상품광고의 게재)

- ① 상품광고 서비스의 이용자는 언제든지 쿠팡이츠 또는 판매자 전용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상품광고의 추가, 삭제, 게재, 게재중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상품광고가 게재되는 쿠팡이츠 앱에서의 상품광고 게재영역, 게재 순서, 게재 정보, 게재 영역의 UI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며, 이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상품광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광고효과 증대 등을 위해 일부 트래픽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를 별도의 공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 (상품광고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 ① 회사는 상품광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광고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게재되는 상품광고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회사는 상품광고의 게재 및 게재 가능 광고의 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내부정책을 쿠팡이츠 또는 판매자 전용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사 및 광고매체의 명예·평판·신용이나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품광고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품광고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② 제1항 이외의 경우는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의 제12조(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 (서비스 이용료)

- ① 이용료는 이용자가 광고상품 이용 신청 시 안내된 사항에 따라 정한다.
- ② 이용료는 회사가 개별 통지 또는 판매자 전용시스템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에 따라 정산한다.
- ③ 회사는 쿠팡이츠 서비스를 통해 계산된 결제 금액에서 쿠팡이츠 서비스 수수료 및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기타 판매자가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상계 가능 금액을 차감하여 잔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관련 세부 내역(예를 들면, 상품 판매 대금, 공제 금액, 지급 금액 등)을 쿠팡이츠 또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 제9조(상표권 침해 신고 시 사후 조치)

- ① 회사는 제3자가 상품광고로 인해 자신의 상표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상품광고의 중단을 요청해오는 경우, 해당 요청인에게 상표권의 침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요청인이 자신의 상표권 침해를 소명한 경우, 요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용자에게 해당 상품광고가 적법한 권리 또는 권한에 근거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요청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된 이용자가 해당 상품 광고가 적법한 권리 또는 권한에 근거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상품광고를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소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기타 검색키워드에 대한 사후 조치)**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상품광고와 관련하여 상표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위 제9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특정 검색키워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문,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제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이미 등록된 이용자의 검색키워드가 제5조 제1항에 해당함을 발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검색키워드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회사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2. 검색 키워드가 관련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상품과 연계되는 등 상품광고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소비자의 클릭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 상품광고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4. 회사의 명예·평판·신용이나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1조(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이용자가 광고상품 이용 신청 시 안내된 사항에 따라 언제든지 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이용자가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료 결제를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상품광고를 중지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쿠팡이츠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12조(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정책에 따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경우에는 「쿠팡이츠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15조 제4항(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⑤ 제2항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조(약관의 적용)**

본 정책은 『쿠팡이츠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 약관』과 일체를 이루어 완전한 효력을 구성하며, 본 정책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쿠팡이츠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 약관」의 규정을 적용하고, 『쿠팡이츠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 약관』에도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판매자용』을 적용한다.